

FTA 동향

관세청 FTA 동향

FTA 주요 동향

MEGA FTA 동향

관세청 FTA 동향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발표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해 국민과 수출입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지난 7월 20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하여 수요자 중심의 FTA 제도 개선을 통해 수출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한다.

그동안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협정 간 세율차가 있는 2개의 FTA 협정 중 수입자 부주의 등으로 고세율 FTA를 적용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저세율의 다른 FTA 협정 적용으로 재신청할 수 없었다.

베트남산 기어박스의 경우 한-베트남 FTA 관세는 0%인데 비해 한-아세안 FTA 관세는 5%가

부과되는데, 이달부터는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저세율의 다른 FTA 협정으로 재신청이 가능하게 되므로 한-아세안 FTA 협정 적용을 신청했더라도 저세율 적용을 위해 한-베트남 FTA협정 적용을 재신청 할 수 있게 된다.

2개의 FTA 협정을 적용할 수 있는 국가는 베트남, 싱가포르, 중국이다.

그리고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관세청(원산지소명서)과 대한상공회의소(기준별 사실 보고서)로 달랐던 발급신청 서류를 원산지소명서로 일원화하기로 하였으며, 마이크로필름, 광디스크 등 자료 전달 매체로만 한정되었던 FTA 원산지 증빙자료의 전자적 보관방법을 확대하여 앞으로는 기업의 자료 보관 실태, 변화된 전산 환경을 반영해 기업의 서버, ERP시스템,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서

보관하는 자료 그 자체에 대해서도 원산지 증빙서류로서의 효력을 인정받도록 하였다.

한편, 국내 유통 중 원산지 둔갑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달 8월부터 개정된 '수입물품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를 시행해 수입물품의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을 확대했다.

수입산과 국산의 구별이 어려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 신규지정 또는 재지정해 총 39개를 운영한다.

신규 지정품목은 냉장훈어, 활우렁쉥이, 활막장어, 활새꼬막, H형강 5개 품목이고, 재지정은 대두유(비식용), 냉동조기, 미꾸라지, 가리비, 돔, 천일염(식용), 냉장갈치 7개 품목이다. 복어(금밀복), 냉동고등어, 냉동갈치 3개 품목은 제외키로 했다.

인도세관의 CEPA 관세 거부 문제 해결, 100억원 상당 혜택 전망

관세청은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CEPA)에 의해 적법하게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임에도 이를 인도 지역세관에서 문제 삼아 CEPA 특혜 관세율 적용을 거부한 사례를 우리 기업으로부터 접수해 인도 파견 관세협력관을 통해 해당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CEPA는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제도이며, 한국 기업이 CEPA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007년 기준 상품 품목분류번호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 세관은 2007년이 아닌 2017년 기준 상품 품목분류번호가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어도 해당 수출물품이 CEPA 특혜관세율 0%가 적용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협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기본세율 10%를 적용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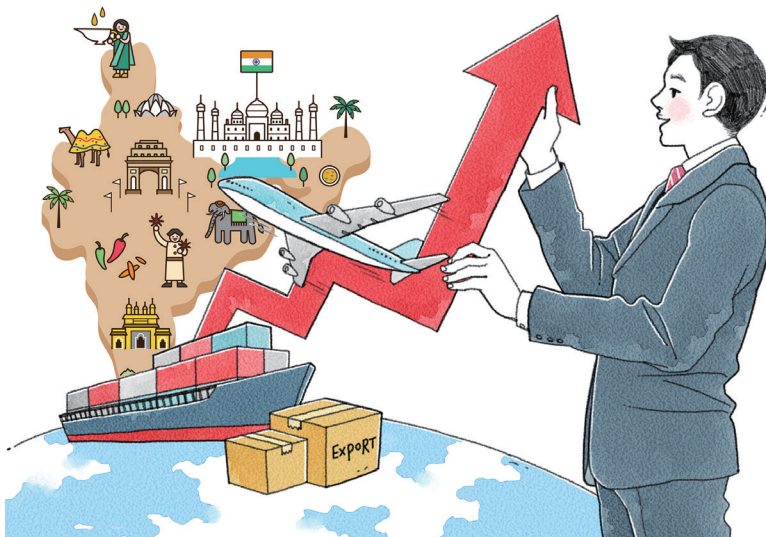
지난 3월 인도 주재 관세협력관은 해당 통관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 관세청을 방문해 담당자에게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는 상품 품목분류번호는 2007년을 기준으로 한다는 양국 합의를 상기시키고 인도 관세청의 시정을 요청했다.

관세협력관이 적극적으로 설득한 결과, 인도 관세청은 잘못된 조치를 취했던 당해 세관에 시정 조치를 내려 품목분류번호 기준 연도를 정정했고 문제가 해결됐다.

주인도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번 문제 해결로 동종 물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서 수출 가격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게 돼 최소 100억원 상당의 혜택을 볼 것으로 평가 했다.

인도는 통관애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지만 그동안 관세관이 파견되지 않아 통관애로 해소에 어려움을 겪어왔었다.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선 현지 관세당국과 접촉해 정보를 파악하고 담당자를 면담하는 것이 중요하나, 기업 입장에선 직접 해외 관세당국을 상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 통관애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올 2월부터 인도 지역에 관세협력관을 파견했다”며 “관세협력관의 활동으로 인도의 통관애로가 보다 신속하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로고 도입

관세청은 2010년부터 도입되어 한-EU FTA 및 FTA 수출 활용확산에 크게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인증수출자'* 제도가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인증'로고'를 도입하며 새로운 도약을 시도한다.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

인증수출자 로고는 세관의 원산지 관리능력 심사를 통해 인증을 받은 수출기업 등에게 제공되는 '인증수출자 인증서'에 표기될 예정이며, 인증기업의 종사자 등은 명함, 회사 현판 등에 삽입하여 제작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관세청 인증수출자 로고

▶ '인증수출자'를 협정(EU 등)에서 표기하고 있는 'Approved EXporter' 머리글자 사용, 또한 사용자 이해 편의를 위해 'Korea', 'FTA' 문구 삽입



[기본안] 사용자가 현판, 명함 등에 표기하여 사용할 있는 심플한 디자인



[활용안] 인증수출자 인증서에 표기되어 발행되며, 로고에 인증번호가 포함됨

※ 확정된 도안은 EU, EFTA 이행위원회를 통해 상대측에 전달 예정

인증수출자 제도는 한-EU FTA*가 발효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현재(※2018년 6월기준) 전국적으로 11,739개 기업이 인증을 받아 활용 중에 있다.

* 대 EU 6천유로 이상 수출 건은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만 한-EU FTA 활용 가능

한편, 중국·아세안 FTA 같이 세관 등 발급기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 수출기업이 '인증'을 받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생략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 비인증업체(제출서류 4-5종, 발급기간 최대3일) VS 인증업체(제출서류 생략, 발급 2시간내)

작년부터 현재까지 총 1,168개 인증 기업이 평균 120건(기업별)의 원산지증명서를 간소한 방법을 통해 신속하게 발급받는 혜택을 누렸다.

관세청은 이번 ‘로고’의 도입으로 기존 인증기업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동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수출 기업들이 ‘인증’ 제도를 새롭게 활용 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 고

[인증수출자 제도 개요]

- ▶ (의의)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로서, 업체별인증수출자와 품목별인증수출자가 있음
-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시 FTA 협정별 혜택

- (업체별 인증수출자) 전체 FTA 및 모든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증을 받은 자
- (품목별 인증수출자) 특정 FTA 및 품목에 한정하여 원산지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증을 받은 자

협 정	인증 전	인증 후
한-EU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 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특혜관세 적용 가능)
한-중국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베트남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첨부서류 제출 - 수출신고필증 사본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원산지소명서 - 원산지확인서 - 그 밖의 원산지 증빙자료 - 현지확인(필요한 경우) - 발급소요시간 (최대 3일)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 현지확인 생략 - 발급소요시간 (최대 2시간)
한-EFTA	수출자의 서명 필요	수출자의 서명 생략 가능



FTA 원산지 증빙자료 전자문서 보관 가능

관세청은 영세·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FTA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 기능을 고도화해 8월 28일부터 보급했다.

이번에 개선된 FTA-PASS는 인력·정보부족으로 원산지 판정 및 품목분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을 위해 '원산지 간편 판정 시스템'을 개발·탑재하고 '품목분류 정보 제공 서비스' 기능을 강화했다.

원산지 간편 판정 서비스는 기존 시스템의 많은 정보 입력과 회원가입 등 사용 상 불편함을 개선해 사용자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크게 높였다. 원산지 간편 판정을 위해서 정보입력 항목을 기존의 62개에서 16개로 축소했고, 판정절차도 5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했으며, 판정 화면의 이동 없이 한 화면에서 판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능개선 전·후 비교

구분	회원가입	정보입력	판정절차	처리화면
기존(일반판정)	필수	62항목	5단계	7개 이동
개선(간편판정)	×	16항목*	2단계	이동 없음

* 완제품 정보(7항목) : 물품번호, 완제품명, FOB가격, EXW가격, 단위, 세번

원재료 정보(9항목) : 완제품 물품번호, 원재료 물품번호, 원재료명, 규격, 단가, 소요량, 단위, 세번, 원산지

이에 따라 원산지 규정을 잘 모르는 초보자도 로그인 없이 시스템 안내에 따라 원재료만 간단히 입력하면 수출물품의 FTA 원산지 판정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품목분류의 정보 제공 및 검색 기능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부담이 크게 덜 것으로 기대된다.

원재료나 완제품의 품명만 입력하면 그동안 세관에 수출 입신고 됐던 거래품명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해당 경합 품목분류번호를 손쉽게 검색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까지 FTA-PASS는 1만7400여 개 기업이 가입해 약 1억여 건의 원산지 판정을 수행했고, 23만여 건의 원산지증명 서류를 발급받는 등 우리 수출 기업이 FTA를 향유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관세청, 베트남 진출 기업 원산지증명서 증빙서류 간소화

관세청은 베트남과의 세관협력회의를 통해 베트남 진출 기업이 겪고 있는 원산지증명서 증빙서류 과다제출의 애로를 해소하게 되었다.

이번 베트남 정부의 증빙서류 간소화 조치에 따라 기업들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인력을 다른 업무로 투입할 수 있고, 특혜세율 적용과 자금 유동성도 확보했다.

또한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물류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됐고, 베트남으로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그동안 베트남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예외적인 경우만 제출하도록 돼 있는 원자재 세금계산서(VAT Invoice)와 자재명세서(BOM) 등을 모든 신청 건에 요구했다.

수출업체는 수출물품마다 약 200~300매, 심지어 800매 이상의 증빙서류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해야만 했다. 과도한 서류제출 요구로 원산지 관리 인력을 충분히 두기 어려운 중소기업체는 특혜 관세 적용을 포기해야 했다.

규모가 큰 기업도 수출건수 만큼 증빙서류를 제때 마련하지 못할 경우 우선 일반수출로 관세를 납부한 뒤 증빙서류 제출 이후 관세를 환급받는 등 막대한 기회비용을 지불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베트남은 저렴한 인건비와 인접성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일선 담당자의 자의적 법령 해석으로 불리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통관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베트남과 통관애로가 잦은 아세안 지역의 세관협력회의 등으로 관계망을 구축하여 기업들이 현지에서 겪는 어려움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TA 주요 동향

한-미 FTA 개정 협상 결과

미국 측의 요청에 따라 개시된 한-미 FTA 개정협상은 그간 1차(2018.1.5, 미국), 2차(1.31~2.1, 한국), 3차(3.15~16, 미국) 협상 등을 통하여 지난 3월 28일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고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 문서로 개정 의정서 2건, 공동위 해석, 합의의사록 및 서한교환 등을 공개하면서, 미국과의 정식서명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주요 이슈로는 'ISDS 남소 제한', '무역구제 투명성·절차 개선', '섬유 원산지 기준 개정',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 연장', '자동차 안전기준 및 환경기준 개정'과 '양국 공통 적용 원산지검증의 원칙적인 합의' 등이다.

'섬유 원산지 기준 개정'과 관련해서는 일부 공급이 부족한 원료품목(업계건의 반영)의 경우 역외산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여 특정 최종재 생산 시 역내산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미국 측은 해당 원료의 역내산 공급부족 여부 판단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재협의를 하였다.

* (역내 공급부족 여부 입증을 위한 美 국내절차) Public Comment, USITC 경제적 영향 평가, ITAC(업계 무역자문위) 검토, 의회 검토 등

'자동차 관세철폐 기간 연장'은 미측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것이고 관세철폐 기간은 현재의 10년차 철폐(2021.1.1 철폐)에서 추가 20년(2041.1.1 철폐) 연장(관세 25%를 2040년까지 유지)으로 재협의를 하였다.

* (대상 세번) 제8704.21.00호(디젤/5톤이하), 제8704.22.50호(디젤/5-20톤), 제8704.23.00호(디젤/20톤초과), 제8704.31.00호(가솔린/5톤이하), 제8704.32.00호(가솔린/5톤초과), 제8704.90.00호(기타)

FTA 네트워크, 멕시코까지 확대

태평양동맹(PA)은 멕시코 푸에르토 바야르타(Puerto Vallarta)에서 열린 태평양동맹 정상회의에서 “한국과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태평양동맹 측의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개시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태평양동맹 정상선언문”을 지난 7월 24일 발표했다.

* 현재 태평양동맹은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캐나다와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연내 완료할 계획인바, 동 협상 종료 이후 우리측과 협상 개시 예정

** 준회원국 가입은 태평양동맹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의미

태평양동맹은 멕시코, 페루, 콜롬비아, 칠레 4개국이 2012년 결성한 지역경제연합(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5%)으로, 2017년 3월 준회원국 지위를 창설하였으며, 우리는 페루, 콜롬비아, 칠레 3개국과는 이미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만큼,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은 멕시코와 신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페루·콜롬비아·칠레와는 각 자유무역협정별 개선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계기라는 의미가 있다.

한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태평양동맹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의했다.

* 태평양동맹 회원국 장관회의, 태평양동맹 옵저버 장관회의

김 본부장은 그간 우리의 10대 수출국 중 하나이나 우리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멕시코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경쟁국 기업 대비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고 진단하며, 이번 태평양동맹 정상선언문은 2005년 개시된 한-멕시코 양자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2008년 중단된 이후 10년 만에 멕시코 시장 진출의 기회를 다시금 확보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 멕시코 FTA 체결현황 : 미국(NAFTA, 1994년), 유럽연합(2000년), 일본(2005년)

정부는 향후 협상과정에서 상품·서비스·투자, 규범 및 비관세장벽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기업들의 태평양동맹 시장 접근성 개선을 추구하는 한편, 국내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최대한 수렴, 우리 협상전략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이를 통해, 미주지역 대부분을 연결하는 자유무역협정 연결망을 구축하는 등 수출선 다변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제1차 협상 개최

한국과 메르코수르(MERCOSUR) 4개국*과의 무역협정(TA) 제1차 협상이 우루과이의 수도인 몬테비데오에서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었다.

*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베네수엘라 5개국으로 구성된 남미공동시장(Mercado Comun del Sur)으로, 한-메르코수르 TA 협상은 회원국 의무 불이행으로 자격 정지 상태인 베네수엘라를 제외한 4개국과 진행

지난 5월 서울에서 양측 통상장관이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공식협상이며,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위생검역(SPS), 무역기

술장벽(TBT), 경쟁, 정부조달, 지속가능발전, 협력, 분쟁해결, 총칙 등 모든 분야의 협상이 진행 되었다.

메르코수르는 남미지역 인구의 70%(2.9억 명), 국내총생산(GDP)의 76%(2.8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 신흥시장으로 주요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사례가 없고*, 높은 관세·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체결을 통해 남미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

* 중남미 외에는 이집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과 FTA를 체결, 유럽연합(EU)·유럽자유무역연합(EFTA)와 협상 중이며, 캐나다와는 2018년 3월 협상을 개시



EU-일본 간 EPA 협정 체결

미국과 중국 간 통상마찰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양자 간 경제동반자협정(EPA) 서명식을 일본과 지난 7월 17일 도쿄에서 체결했다.

EPA가 발효되면 일본과 EU 28개 회원국이 교역에서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게 된다. 일본과 EU를 합하면 인구 6억명, 세계 무역의 37%,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중 약 30%, 무역총액의 40%를 차지한다. EPA는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체결한 통상협정 중 최대 규모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EU와의 EPA 체결로 인한 경제 효과는 2016년 일본 GDP를 기준으로 5조2000억엔(약 52조원) 수준이다. 신규 고용 창출 효과 역시 0.45%(2016년 기준, 29만2000명)에 달하고, 미국이 빠진 TPP의 경제 효과도 GDP 1.49% 증가(2016년 기준, 7조8000억엔)할 것으로 내다봤다.

양측 사이에는 90% 이상의 관세가 없어진다. 특히 협정이 완전히 이행되면 일본은 EU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97%의 관세를 폐지한다. EU 수출업자는 매년 10억 유로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일본은 미국의 탈퇴 선언 후 동력을 잃었던 TPP 논의를 주도해 지난 3월 서명을 마쳤다. 11개국 참여 TPP(CPTPP, TPP11)는 회원국 비준을 진행하고 있으며 과반수인 6개국 의회 비준이 이뤄지면 효력이 발생한다. 일본은 TPP11의 경우 올해 안에 발효시키기 위해 참가국들을 재촉하고 있다.



MEGA FTA 동향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3차 공식협상 개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제23차 공식 협상이 제22차 싱가포르 공식협상에 이어 지난 7. 23.(월)부터 5일간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었다.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아세안(ASEAN) 10개국 및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MEGA FTA

이날 회의에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참여국은 지난 7월 장관회의(도쿄)에서 합의한 연내 실질타결 목표를 재확인하고, 수석대표회의*를 중심으로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에서의 시장개방 협상을 심도 있게 진행하였으며, 원산지·통관·지재권 등 일부 규범 분야에서 조기 타결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수석대표 회의,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원산지 등 총 14개 작업반 회의 개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아세안·인도 등 신흥방정책 주요 거점 국가를 포함해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제권역*을 아우르는 협상으로, 상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고 젊은 인구 비중도 높아*** 미래 유망시장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타결될 경우, 교역·투자 기반 다변화 뿐 아니라, 최근 일고 있는 보호 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역내국가들의 공동 대응 체계 마련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RCEP 대(對) 세계비중(2017년, IMF) : GDP 25.4조 달러(32%), 인구 36억 명(49%), 교역 9.6조 달러(29%, 2016년)

** 2016년 성장률(IMF) : 中 6.7% / 印 6.6% / 베트남 6.2% vs 美 1.6% / 유로존 1.7%

*** 중위연령(2017, UN) : 인도 26.7세, ASEAN 29.2세 vs 한국 40.8세 일본 46.3세, 미국 37.6세

정부는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 진전을 위해 조속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타결에 적극 기여하면서,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TA TRADE REPORT

